

문서번호 마케팅본부 26-00615 호

(이현정 팀장, T: 769-3251)

발 신 2026.08.26.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 수시공시담당부서장

제 목 수시공시 대상 소규모펀드 해소 안내의 건

1. 귀 사(행)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
2. 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 89 조 및 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 제 5 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당사 소규모펀드 해소현황을 안내하오니 수시공시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대상펀드 :

펀드명(운용펀드)	펀드명(투자자펀드)	발생일자	수시공시 내용
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	대신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[주식] Class A, C, C-e, C-F	2026-08-24	소규모펀드 해소 (모투자신탁 원본액 50 억 초 과)
	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 자투자신탁[주식] Class A, C1, C2		
	대신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[주식혼합] Class C		
	대신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제 2 호 [주식혼합]		
	대신 대표기업 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[주식혼합] Class C, C-e		
	대신 마이홈 장기주택마련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[채권혼합]		
	대신 퇴직연금 40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Class C, C-e		
	대신 퇴직연금 60 대표기업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		

2. 수시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 해소 공시

상기의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 제 5 호에 근거하여 설정되고 1 년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으로, 소규모펀드(1 개월)에 해당되었으나, 2026.08.24.부로 소규모펀드 해소 사유(모투자신탁 원본액 50 억 초과)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첨 부 : 소규모펀드 해소현황 1 부. 끝.

대 신 자 산 운 용 (주)

대표이사 정 만 성



수신처: 기업은행, 교보생명, 대신증권, 미래에셋증권, 삼성증권, 신한은행, 신한투자증권, 우리투자증권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케이프투자증권, 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하이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양증권, 현대차증권, 흥국증권, BNK 투자증권, DS 투자증권, IBK 투자증권, KB 증권, NH 투자증권

